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37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박균택·전진숙·양부남

조인철 · 정준호 · 한준호

박희승 • 민형배 • 한민수

서영교 • 정진욱 • 안도걸

허 영•박지원•김현정

주호영 · 백혜련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 년 4월 13일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여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 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상업시설·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지원할 수 있으며"를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사업의 추진에 수반되는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가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며"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 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11조제1항에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3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 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 제13조제2항 중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주변지역"을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으로 한다.
- 제14조 중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를 "설계비·토지보상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전사업을"을 "국가는 이전사업을"로, "지원 사업을" 을 "특례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특례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과 별도로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며, 세부사업은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부담금의 감면 등)"을 "(부담금의 면제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 ·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하 천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 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이전지역 이주자 지원) ①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의3(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의4(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 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 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의5(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을 면제한다.
- 제17조의6(기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기부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국유재산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재산의 평가방식을 양여재산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 제17조의7(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 및 처리비를 공제한다.

제17조의8(기부대양여 특례) 국가는 국방안보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전사업 중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협상 및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와 정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u>종</u> 9. -----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 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 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 · 상업시설 · 첨단산업시설 · 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말한다. 개발하는 사업-----.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cdot |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cdot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 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 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사업 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 의 추진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을 포함한다)가 용도 폐지된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 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지원하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 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 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32. (생 략)

<신 설>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 여는 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제9조제4항 단서를 준용 한다.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1. ~ 32. (현행과 같음) 3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지원 등) ① (생 략)

② <u>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u>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 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 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 허가 · 협의

- 3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 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 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개발 · 일반산업단지개발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 획의 승인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 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의 신고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 치단체는-----

록 종전부지 <u>주변지역</u> 내 기반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기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u>이전사업</u> 2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u>및 종전부지 수변지역</u>	-
	-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
	_
선케미 트리브지미트 기스	– נ
설계비・토지보상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히	<u> </u>
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u>①</u> <u>국</u> 7	<u>}</u>
<u>는 이전사업을</u>	_
	_
	_
	_
	_
특례사업을	
② 제1항의 특례사업은 「급	<i>L</i>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	<u>=</u> 1
별법」 제9조제2항과 별도로	<u>_</u>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	<u>L</u>
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
으로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역	H
부담하며, 세부사업은 이전지역	1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u>}</u>
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	•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	<u>=</u>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제16조(부담금의 면제 등) ①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 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 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 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기반시설설치 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 설>

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산지관리법」, 「하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 「농지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 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 법」, 「하천법」,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 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 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 료 ·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 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7조의2(이전지역 이주자 지원)
①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7조의3(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의4(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 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 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면 제할 수 있다.

②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의5(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신 설>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의무이행을 면제한다.

제17조의6(기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기부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국유재산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재산의 평가방식을 양여재산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제17조의7(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

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 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 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 및 처리비를 공제한다. 제17조의8(기부대양여 특례) 국가 는 국방안보상 중요성을 고려 하여 이전사업 중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협상 및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 와 정산한다.